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2015년 8월 pp.63~93
한국세무학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김수성* · 문성훈**

<요 약>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통하여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후자의 방법은 기부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을 고찰해 볼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기부문화의 전사회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부행위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부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각 기부제도에 부합한 세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부적 제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의 문화가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내지는 세액공제율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가급적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받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며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기부금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보험을 확산하고 기부금장려세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주저자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mooncta@hallym.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2월 12일 1차수정일 2015년 6월 5일 2차수정일 2015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5일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에 따른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우리사회에서 기부를 통한 약자의 지원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부의 세제지원이 정착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기부금 세제, 기부문화, 기부제도,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부문화 활성화

I. 서 론

최근 기부를 통한 나눔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나눔은 국민들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최근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모금되고 있는 기부금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금 법적인 지원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과 기부금 제도 및 기부금 세제지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일상생활 속의 실천 활동으로 정착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란 단어는 과거부터 여태껏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단순히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기부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 관련 아이디어도 마스크를 통하여 많이 나오고 있으며 다채로운 기부제도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실로 고무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기부형태의 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기부 형태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전문 능력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소위 ‘재능기부’나 본인의 재산의 반액을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위 ‘기부연금’제도 및 본인이 공적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소위 ‘연금기부’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바, 거대한 기부금액을 요구하는 고액기부자의 기부가 필요한 제도가 있는 반면, 그다지 큰 자금이나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기부할 수 있는 기부규모가 소소한 기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¹⁾ 이처럼 소액의 기부재산에서 시작하여 전 재산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

1) 최근 정부는 「나눔기본법」을 마련하고 기부문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기부연금제도는 유산기부나 재단설립 외에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의 계획적 기부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

한 기부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부제도에 비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기부행위가 크게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영역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수요의 총량 확대의 측면과 소득계층 간 양극화 현상의 측면이 크게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민간복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면서 그동안 민간부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제적인 평가와 효과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아직까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문화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관련 각종 제도를 진단하여 기부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 관련제도와 기부 세제에 관한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기부제도와 기부금 세제의 일반론을 살펴본 후, 더 나아가 이를 확대하여 현실의 제도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부관련 제도와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과 제도적 토대의 양대 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 세제에만 존재하고 있는 기부금 이월공제 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제혜택 부여방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기부자로 하여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가 현실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방향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기부금의 제도적인 지원과 세제 지원책을 동시에 포함하여 개선책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²⁾

러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기부의 하나인 기부연금과 연금기부 등에 대하여는 연금을 생략을 하기로 한다. 아직까지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는 세제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세제지원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 2) 기부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기부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효과,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 서희열외2(2008)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을 토대로 기부문화에 대하여 실태분석을 하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갑순외2(2010) 연구에서는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황창순(2001)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하여 기부에 대한 행태를 파악하였다. 정재연(2014)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박기백(2010)은 소득이나 조세감면 혜택, 학력 등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밖에 김도승외2(2011), 김진수외2(2009), 변

그 일례로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능기부 및 용역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포인트 기부제와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주식기부 등의 제한점 등을 벗어나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당해 연도에 공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기부금 명세서를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하기 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발급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문제가 많았던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 부당공제 방지대책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실되었던 비영리단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에 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의 체계의 변환으로 인하여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거 소득공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세액공제율의 확대가 적극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부금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의 활성화가 저해된 바³⁾, 과거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내지는 세액공제율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동일금액을 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거나 과거보다는 세부담이 다소 감소되는 세제지원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⁴⁾ 2013년에는 소득공제의 총

혜정(2011), 손원익(2001)은 기부금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법적적인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박태규(2013)는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3) 매일경제신문 2015년 6월 1일자 참고. 2013년 말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 세제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직장인 기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개정이 되면 기부금 세금혜택이 축소되어 실제로 기부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2015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직장인 기부금액은 49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55억원 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 줄어든 것이다. 직장인 기부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시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이다. 공동모금회는 직장인 기부를 두고 '개인 기부의 근간이자 중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왔으나 전년 동기(58억원)보다 17.2%나 급감한 것이다. 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기부단체 직장인 기부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자 상당수 직장인들이 기존 정기 기부를 해지하거나, 신규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3년말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이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크게 줄었다.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든 후 기부에 대한 욕구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4) 김수성·문성훈(2014)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

액을 제한함으로써 기부문화가 저해할 것으로 문제시되어 이에 대한 법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져 그나마 기부문화에 대한 저해가 방지될 것으로 보였으나, 2014년에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수년간 정부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한 다양한 지원책이 퇴색 되거나 없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되어온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기부문화 활성화 전략을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한 바, 기부문화의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책의 강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편적으로 하나의 제도만을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기부제도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려는 입법 당사자들에게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기부 관련 법령의 고찰과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과 실제적인 기부를 통하여 세부담의 감소를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기부금 관련 법령 및 세제지원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 및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 및 세제지원방안을 동시에 살펴보고 현행 세법의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기부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하였다.

Ⅱ. 기부금 관련 세제의 검토

1. 기부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부의 종류에는 주식기부, 자산기부, 물품기부, 현금기부, 용역기부, 재능기부 등 다양한 기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기부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물품기부와 재능 및 주식과 자산을 기부하는 일회성의 기부가 있는가 하면, 기부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한 세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매년 기부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거나 기부의 효과가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계획기부 등이 있다. 이러한 기부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세제지원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행 기부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 및 세제지원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부유형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및 기부금의 세제 지원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 인지에 따라 조세지원 내용상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와 개인의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소득의 10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대상도 법인에 비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100%이었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은 75%, 2009년부터는 50%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정기부금 이외에 지정기부금이 있는 바,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은 소득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및 의료법인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각 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에서만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⁵⁾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이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등은 100%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수입금액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⁶⁾ 또한, 별도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⁷⁾

각 기부금 단체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바,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기관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비용공제제도는 각 기부금의 유형별로 적용대상 단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 개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조세지원의 내용도 차이가 있고 대상단체도 차이가 있다. 법인

5) 법인세법 제29조

6) 특별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7) 학교법인·산학협력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의 경우에는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학교법인
인의 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문화예술진흥기
금을 대상단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보다 법정기부금의 적용 범위가 넓어,
법인의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하여 다음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
다. 사립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
구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이외에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등이 있다. 이밖에 지정기부금의 적용대상이 되
는 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
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한 단체가 있다.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되었으며 기부
금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본인의 소득금액의 30%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되었다. 즉, 개인
의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소득에서 차감되었다.⁸⁾ 반
면, 소득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60만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되었다.⁹⁾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불입금
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일 경우나 2백만원일 경우나
기부금 납입액이 1백만원이라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15만원이 된다. 법인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을 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표 1>은 연소득이 1천만원
인 기부자가 4백만원을 기부한 경우의 과거의 소득공제방식과 현행의 세액공제방식의 세부담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표 1> 기부금 혜택 한도 및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액

기부자	기부금 종류	기부금 혜택 한도	손비인정액 한도	세액공제액
개인	법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 전액	4백만원	60만원
	지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3백만원 (1백만원)	60만원
법인	법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의 50%	4백만원	—
	지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1백만원	—

8) $1,000\text{만원} \times 30\% = 300\text{만원}$ 범위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9) $200\text{만원} \times 30\% = 60\text{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된다. 단, 40만원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의 차이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지원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측이나 기부를 받는 측 쌍방에 대해서 다각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기부를 받은 자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연한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에는 비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부를 하는 자(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감하고 있다.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또는 손비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¹⁰⁾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 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그간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비해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바, 주요국의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법인의 기부에 비하여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는 개인의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인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기부는 이익을 창출하여 투자자 및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배하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어서 기부행위에 제한이 있게 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온 것이다. 기부를 하는 법인의 대부분은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주식회사는 이익극대화를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므로 과도한 기부는 소액주주 등의 권리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

기부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를 벗어나 이웃과 공존하겠다는 공동체 마인드의 발현이라고 하

10) 단,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11) 손원익·김정아·송은주, 2007, “주요국의 기부금 주요 현황”,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p.18, p.37, p.39, p.50) 참조. 미국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30%~50%를 공제하고 있지만, 법인의 최대 10%로 공제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은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로 공제하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2.5%만을 공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개인의 경우에는 66%~75%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은 60%까지 공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또는 중산층에서 중하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3년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이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고, 이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의 싹을 자르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부금액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과거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를 하였을 때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때 공제받는 공제율은 각 개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되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법정기부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기부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이는 과세표준구간(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별로 공제율이 달리 정해졌다. 즉, 기부자의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서 6%를 공제받고,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4,600만원인 기부자는 15%, 4,600만~8,800만원인 기부자는 24%, 8,800만~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 기부자는 38%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체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25%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부 참여자가 가장 많은 중산층(4,600만~8,800만원 구간)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기존에는 24%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5%만 일괄하여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기부금액이 3,000만원보다 많은 고소득층 기부자 역시 기존 공제율은 최대 38%였으나 25%로 공제율이 대폭 축소가 된 상황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연 1,200만원 이하는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가격탄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금공제율의 변화에 따라 기부행위의 변화정도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¹²⁾ 한국재정학회(2013)의 연구 결과를 보면¹³⁾,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간 기부금액이 1조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2년 기준 국내 기부금 총액은 11조 8,400억원 이었고, 이 가운데 직장인 기부금은 5조 5,400억원에 달했다. 2013년 한국재정학회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금에서 걷는 세금은 연 3,057억원 증가하였지만, 연간 기부금은 2조 376억원 가량 감소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12) 미국·영국은 ‘기부가격 탄력성’(세금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부행위 변화 정도)이 1이다. 이것은 세금공제율이 1% 떨어지거나 높아지면 기부도 1%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기부가격 탄력성’이 7~8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금공제율이 1% 감소하면 기부는 7~8%나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는 뜻이다.

13) 송헌재, 2013,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79호 : 151 - 178

4. 주요국의 기부금 세액공제

최근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인 한국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개인들의 기부금에 대해 5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기부금의 20% 또는 40%를 공제해 준다. 프랑스에서는 기부금 공제가 한국과 같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공제율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부금에 대해 15%(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25%)를 공제해 주지만 프랑스는 무려 66%를 공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의 경우 공인단체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시 기부액의 66%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정자산단체에 대한 기부시에는 470유로를 기준으로 470유로 미달시에는 기부액의 7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단체와 공익재단에 기부시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¹⁴⁾

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대만·독일 등은 여전히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속해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주체와 기부받는 단체, 기부내용 등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시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기부금액의 20%~40%를 공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기부방법 또한 다양하다. 기부는 현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도 가능하다. 일본은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등 모든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가 상이하다. 주요국 개인기부금 세제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국 개인기부 세제지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미국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0~40% 소득공제	한국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3,000만원 이상은 25%)
일본	기부금에서 5천엔 소득공제		

1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손원익외2(2007)의 pp.18~50을 참조할 것

III.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 및 세제상의 문제점

기부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 및 세제 지원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점 및 소득 세법상의 기부금에 관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문제점 및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기부상의 문제점

가. 용역기부의 개념 및 범위

용역기부란 기부행위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물 또는 자산기부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용역의 형태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세법을 살펴볼 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용역(service)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용역기부에 대한 기부금 손금(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기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세법상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¹⁵⁾ 다만, 세법에서는 별도로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용역의 가액을 8시간당 5만원으로 산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이다.¹⁶⁾ 즉, 용역기부 중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에 투입된 개인의 자원봉사용역에 한하여만 소액의 금액만을 예외적으로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우 기부의 인정범위가 작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재해복구 자원봉사 이외에 별도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다른 자원봉사용역은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 등이 업무시간에 재해복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15) 용역기부는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재산의 감소로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백운찬, 2012,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0-30) 용역기부에 대해 세법상 기부금으로 취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6)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6항

① 자원봉사용역의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②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③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틸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17)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용역의 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서면1팀-216, 2008.02.18.).

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재능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되어지나, 프로보노(Pro Bono)¹⁸⁾와 같은 용역기부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용역기부에 대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기부로 원칙적으로 기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역기부는 재산기부와는 달리 기부금액의 측정이 어렵고 납용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기부의 인정단위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하에서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⁹⁾ 즉, 전문직 종사자가 제공하는 개인의 서비스의 공정가격 결정이 어려워 용역가액의 결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점과 용역기부의 인정단위를 개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나. 용역기부의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및 전문가의 사회봉사 및 공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부행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달란트(재능)기부 이벤트를 통해 ‘재능’의 기부를 꾸준히 장려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기술, 예체능, 생활지원 등 전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²⁰⁾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이러한 재능기부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전문직 종사자가 프로보노를 하지 않고 전문영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액을 계산한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 즉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용역가액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일정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프로보노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전문직 종사자의 용역기부 행위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부를 받는 단체가 전문직 종사자에게

18)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프로 보노라고 칭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1993년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7월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의무적인 공익활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했던 프로보노는 현재 의료·교육·경영·노무·세무·전문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19) 박훈·이상신·문예영, 2010, “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49.

20) 백운찬, 위의 논문, p.234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전문직 종사자가 그 용역대가를 받아 다시 용역기부를 받는 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하여 기부금공제 등을 받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문직 종사자가 받은 용역대가가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지역 자원봉사에 대해서만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기부문화를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자원봉사 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세수손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재정에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용역기부는 기부의 대상이 금전 등의 자산이 아닐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전 등을 통한 기부와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 금전 외의 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만을 명문규정으로 언급하고 있지만²¹⁾, 그 ‘자산’이 유형의 자산 이외에 용역이라는 무형의 자산도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상정해 볼 때, 용역도 금전 이외의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데 용역을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부금의 평가에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실무관행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조세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용역의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용역기부의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주식기부상의 문제점

가. 주식기부의 제한

개인의 기부 수단으로 금전이 아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활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 중 주식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도를 초과시에는 과세가 된다. 즉, 영리법인의 연결된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상속세 또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는 증여세가 과세된다.²²⁾

이는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여 주식의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의 회사를 지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된다.²³⁾ 즉,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규정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가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과세가 타당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근거를 갖고 있다.²⁴⁾ 본 규정은 1990년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주식보유액의 20%를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주식보유 금액의 5%로 축소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의 10%로 점차 완화되었다.²⁵⁾

나. 공익법인 주식기부 제한의 문제점

본 규정은 재벌들의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익법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기부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²⁶⁾ 미국의 경우에는 공익성테스트를 거쳐 면세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의 기부 자체가 아닌 공익법인에서의 지출행위에 대한 통제를 통해

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3) 백운찬, 앞의 논문, p.205.

24) 김도승·김현동·이전오, 2011,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재정법제연구 11-15-8, 한국법제연구원, p.164.

25) 박훈·이상신·문예영, 앞의 논문, p.38.

26) (매일경제, 2008.12.9자 인용)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61)씨는 지난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주식의 5%를 초과하는 85%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 장학재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이 공중분해될 처지에 있다면서 세금부과에 반발하였다. 황씨는 “대한민국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 전 고심을 많이 했고 수차례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결론내렸다”며 “이 재단의 경우처럼 장학활동이 드러나 있더라도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엔 무상증여로 분류되어 이같은 처분이 된다”고 말하는 등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면세혜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주식의 활용여부가 과세에 무관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또한, 공익법인 등 자선단체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지분율의 경우에도 미국은 보유비중이 20%, 일본은 보유비중이 50%, 영국은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이 주요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²⁸⁾

3.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의 문제점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개정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포함한 특별공제의 대부분과 연금보험료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에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15%의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득공제방식과는 달리 세액공제방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5%보다 낮은 저소득층은 소득공제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하는 한편,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역진성을 완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지출하기 어렵고 그 규모 또한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2007년부터 계속 증가시켜 왔었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상승하였다.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온 것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서 있으나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의 전환으로 그동안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하여 지원해온 정부정책의 방향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기부금 모집 규모가 실제로 축소되었고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부는 객관적 필요경비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아닌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대라는 효과를 감안하고, 고소득층의 기부문화 조성이

27) 박훈·이상신·문예영, 앞의 논문, p.37.

28) 백운찬, 앞의 논문, p.206

전반적인 기부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 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층의 기부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켜 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허위 기부금 명세서 발급과 관련한 문제점

기부금 명세서 발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기부금 과다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기부금의 과다공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사실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을 수수하여 허위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고액의 추정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²⁹⁾ 기부금 공제 혜택을 허위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간 적용되고 있는 공제 항목 중에서 허위·과다 공제받은 기부금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과정에서 매년 허위·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기부금 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는 불법 기부금의 허위공제 문제가 대체로 정부 관리가 취약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발생된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다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IV.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지원방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관련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제지원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한 기부제도의 법제적인 지원과 세제 지원의 양면적 지원이 필요하다.

1.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가.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강구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는 기부행위를 강조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기부는 기부행위

29)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허위발급 전체금액의 2%,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를 한 경험이 있는 자가 기부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 또한 중요한 기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능기부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곳과 재능기부자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³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 등을 발휘하면서 봉사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능기부 수혜자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재능기부는 다른 의미로는 봉사활동이지만 이런 재능기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재능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세부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능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TV,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부활동을 홍보하고,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과 기부받을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강화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능기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의 사회공헌은 그 규모와 다양성 등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이전과 달리 시간과 재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부활동도 다양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기부관련 프로그램도 그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재능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와 연관된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의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재능기부를 포함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전문기업을 창업하거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능기부에 대한 기부자의 인식전환 및 기부자의 참여채널 다양화 등의 사회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능기부에 대해 세법에서도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전문적 종사자 등의 인건비 등 일정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입장에서도 재능기부를 장려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를 재능기부까지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0) 재능기부 코디네이터는 재능기부를 하려는 사람과 재능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재정수입의 감소와 허위 자원봉사활동의 양산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출연 대상이 확대되면³¹⁾, 이에 대한 남용의 사례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부금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전문부서 혹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³²⁾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능기부 영역 자체도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금전 외의 자산’에 대한 유형의 자산 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영역가액 평가와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세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공익법인 주식기부 제한 완화 방안 강구

공익법인이 보유주식의 주식기부를 통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지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편법증여를 통한 공익법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막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주식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부(wealth)의 이전 통로가 되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편법증여를 통한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매각이 어려워 주식을 공익법인에게 불가피하게 증여하려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5%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을 기업의 지배구조강화를 위한 연결통로로만 이용하고 있는 지 등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단계에 대한 세법상 제제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식취득 단계에서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경영권 승계 등의 기업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는다면 주식보유 한도를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더욱 확대하여 20%로 확대하거나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한을 완화하고 주식보유 및 관리단계에서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로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공익법인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무효화

31) 박훈·이상신·문예영, 앞의 논문, p.119.

32) 임규진·이전오, 2012,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p.304.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³³⁾

다. 포인트 기부제(가칭)³⁴⁾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는 재능기부와 보유주식의 주식기부제도 이외에 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는 포인트 기부제도의 확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부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포인트와 적립금이 누적되는데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누적된 포인트는 소멸되게 된다. 이러한 포인트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를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기부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기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립된 포인트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기부제도를 확산하는 방법은 기부자의 의도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기부행위로서 막대한 기부자금이 소요되거나 심적인 부담이 있지는 않은 사회 생활속 기부라 할 수 있다. 포인트 기부제(가칭)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가 기부금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통신사 누적 적립금이나 항공 마일리지 등을 통한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천대의 사례가 이에 대한 모범사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³⁵⁾ 이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및 항공기 마일리지 등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포인트 기부제는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부된 금액은 기부금 공제로 하여 이중의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3) 백운찬, 앞의 논문, pp.207-208.

34) 포인트 기부제도는 퇴직기부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공식적인 명칭은 없다. 다만, 포인트 적립시 일정기간 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포인트를 근거로 하는 기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자들이 명칭을 포인트 기부제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35) 최근 인천대가 국내 대학중 처음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 대학발전기금 기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인천대는 전국 대학 최초로 ‘신용카드 포인트 대학발전기부금 기부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발전기금 모금에 나섰다. 이 제도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사용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지만 무관심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적립된 포인트를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에 해당된다. 인천대학은 주요 신용카드 10개사와 협의하여 카드 포인트를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동안 방치됐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퇴직기부제도(가칭)의 활성화 방안 강구³⁶⁾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부관련 제도로는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퇴직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 이외에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매년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1년 중의 한 달 분에 해당하는 봉급금액이 퇴직금으로 누적되어 적립금으로 적립되게 된다. 이때 퇴직금의 일부를 은퇴시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3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러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년간의 퇴직금이 누적되게 된다. 이 경우 은퇴시점에 수령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하여 기부할 수 있는 퇴직기부제(가칭)를 활용하는 것이다.

(1) 퇴직기부제도의 활용방안

각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시점에 퇴직기부제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퇴직기부를 통하여 사회적인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퇴직기부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와는 달리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된다. 가령 본인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액의 10%인 2천만원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퇴직기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은 퇴직시 바로 기부할 수 있도록 현재 54개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계하여 이를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직기부제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기부단체에 기부되거나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세제지원을 통한 퇴직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제도의 지원과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정부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퇴직기부를 하였을 경우 퇴직소득세제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퇴직금액의 일부를 기부하였을 경우 퇴직소득세제를 경감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세수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뿐만아니라 퇴직기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

36) 퇴직기부제도는 현행법상 공식적인 명칭은 없다. 다만,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근거로 하는 기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자들이 명칭을 퇴직기부제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의 산출금액에서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일정비율만큼 세액감면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 그밖에 기업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 강구

최근에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등³⁷⁾ 공공기관을 비롯한 1% 나눔문화를 실시하는 기업이나 가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의 보완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통해서도 기부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를 위한 기부자금으로 재원이 흘러갈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부재원의 마련과 기부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물품을 구매시 구매금액의 1%가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물건의 구매에 따른 포인트를 실제로 기부로 옮기는 것을 ‘마일리지 기부제(가칭)’로 칭할 수 있다. 이것은 후자의 간접세를 통한 1%의 기부에 비하여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기부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제도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비시에 1%는 기부를 위한 자금으로 재원이 흘러갈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부재원의 마련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통해 가능하리라고 본다. 가령, 소비자가 특정물건을 소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간접세의 1%는 기부금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⁸⁾ 이 방식은 실제로 기부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한 기부문화 이외에 사회봉사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물품지원이나 현금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지만, 이에 반하여 사회봉사라는 것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금전이 아닌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각자의 직업 등을 살려서 하는 전문 자원봉사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인 일반자원 봉사활동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능기부나 용역기부와 유사한 성격의 기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기부행위와 사회봉사의 차이는 물질적 도움이나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냐로 구분되지만 각각의 기부 문화 활성화에는 모두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 비록 기부금의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기부나 용역기부 등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7) 최근 공기업평가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평가지표에 산입하여,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8) 가령, 전자제품 백만원짜리를 구매한다고 할 때 부가가치세 10%인 십만원 이외에 별도로 구매가격의 1%인 만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기부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2. 세제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은 현행법상 기부금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부금 지정단체의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가. 기부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선택권 부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부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행위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옹능과세원칙이 훼손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³⁹⁾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방식을 다시 소득공제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부의 정책신뢰성의 훼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 경우 기부금 지출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세액공제방식에 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는 일정부분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가 세수로 사후에 지원해 주어야 할 공익성이 높은 기부사업을 민간부문이 사전적으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재정수지는 큰 변동이 없거나 효율적인 민간부문의 기부로 인해 정부의 사후 지출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정수지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이월공제 보다는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 받는 방안

현행 기부금 지출시에는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이월공제하여 차후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10년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공제초과 등의 사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2년에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이 5년 이상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9) 문성훈·김수성, 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201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p.209

40) 문성훈·김수성, 위의 논문, p.209

그러나, 이러한 이월공제 제도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매년 일정액 이상을 기부해온 자가 자신에게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부금액이 남아 있다면 당해연도에 추가적인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고 더 이상의 기부를 하지 않고 올해의 기부를 차기로 이월하여 기부를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 기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해 연도에 지불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가 되도록 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에 한하여 이월공제란 제도가 있는데,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지불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해연도에 지불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가 된다면 기부자가 다음해에 이월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기부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매년 기부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하여 이월공제된 기부금을 소득공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월공제된 금액을 관리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해 연도에 지불한 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한다든가 가족명의로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가족 중에서 세부담이 가장 높은 가족 중에서 한명이 기부금 공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 기부금 지정단체의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방안

기부금 지정단체의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선, 기부금 단체의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허위 기부금 발급시에 지정기부금 단체의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허위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1) 허위 기부금 발급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 강화

기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기부금 단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정기부금으로 등재된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관보에 공고하고 있다. 기부금지정 단체는 정부가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지정된 기부금 단체는 주어진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허위로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활용해 허위로 공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단체의 지정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도 가능하다.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 밖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2) 기부금 명세서 허위발급시 가산세 중과 부과

개인 기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 외부전문가 참여 회계감사제도,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유산을 기부하는 등 유산기부 방법이 다양화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모금전문가 양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허위로 공제 받은 기부금 공제액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가산세율을 인상하여 중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허위 기부금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기부금과 관련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바, 기부금 공제시 세금회피 탈루 등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회계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부금단체의 회계적인 투명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나눔단체의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므로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국세청 등 관련 홈페이지에 자율공시를 하게 되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의 투명성은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도 잠재적 기부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적인 기부금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선 단체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개인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는 기부를 받는 자선 단체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자선 기부 협회는 이들로부터 연례 보고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한다. 이를 참조하여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선 단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면 기부를 통한 개인 기부문화 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가들은 유산 기부나 개인 기부보다 기업 이름이나 회사의 주식을 기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개인 기부자의 기부가 활성화된 이유로는 세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⁴¹⁾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 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기부 문화를 바꾸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세제적인 뒷받침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제도·세제적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가. 기부보험의 확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 기부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부보험은 그 영역을 사회로 넓혀서 마지막 순간에 보험금을 비영리법인에게 유산의 개념으로 기부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부가 기부단체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면 기부보험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단체를 위해 꾸준히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기부보험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부를 할 때는 자기가 버는 것 중에 얼마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만족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기부보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보험을 통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인 기부문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 기부금 장려세제 지원의 적극 활용

기본적으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기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만큼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기프트에이드(Gift Aid)란 제도를 운영하여 기부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본 제도는 기부금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최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기부금 장려제도가 부각되고 있

41) 지난 1969년, 미국 의회는 개인 출연재단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고액자산가들이 재단 출연이 어려워지자 자선 단체에 유산을 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자선 단체는 개인 기부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맞춤형 기부 설계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기부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세금 공제 방법의 대부분을 철회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때문에 세금 공제를 원하는 재무 설계자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계획 기부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장려제도가 2016년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는 기부금에 대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또 다시 기부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부장려금제도라 칭한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도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환급해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처럼 약 15%를 감면해 주는 정도로는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정기적인 조세지원제도 안내 홍보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문화가 발달된 긴 역사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 기부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국세청 차원에서의 기부제도에 대한 안내나 정책적 홍보자료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기부가 일반화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부관련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안내 자료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기부공제 대상 단체(조직), 공제대상 기부, 공제 비 대상 기부, 공제가능 시기와 공제한도 등에 대한 안내와 예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기부금명세서를 발행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단체의 자선활동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두고 있는 주들부터, 중간정도 기간인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들, 그리고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주들 등, 각주마다 다양한 적격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라. 실제적인 기부자의 설문조사를 통한 과세방향 설정

기부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기부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과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부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기부자에 대한 세제의 혜택의 정도에 대하여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실시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기부자라면 세제 혜택 정도에 따라

실제로 지출하는 기부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구체적인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부자의 행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가 세제혜택에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세제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우리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뿐만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세법을 살펴볼 때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기부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기부제도와 세제지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 및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부 아이디어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및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구축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부관련 제도 및 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 문화의 확산을 막고 민간의 복지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고액 기부를 현행보다 더욱 장려하고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연도 지불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전액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기부자의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시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뿐만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각 개인의 소중한 소액기부가 모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첫째,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강조한 기부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 또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능기부 형태를 발굴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포인트 기부제(가칭)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누적된 포인트를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하여 기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 주식기부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이 주식기부를 통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지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 5% 초과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제로 주식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퇴직기부제도(가칭)를 도입하여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퇴직기부제도를 마련하고 퇴직세제의 개편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기업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이나 물품의 구매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포인트 기부제나 마일리지 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공익법인 주식기부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2013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바, 기부금의 지출이 감소되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출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 받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부금 지정단체의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보험이나 기부금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부문화를 유도하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조세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홍보하는 것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기부금 발급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건을 강화한다거나 기부금 명세서 허위 발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기부금 지정단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문화의 확산을 막고 민간의 복지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액 기부를 현행보다 더욱 장려하고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갑순·정지선·임규진. 2010.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6권 제1호 : 75-113
- 김종근·전병욱. 2012.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9권 제3호 : 109-137.
- 김수성·문성훈. 2014.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1호 : 177-210
- 김진수·김태훈·김정아. 2009.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09-02,
- 김도승·김현동·이전오. 2011.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재정법제연구 11-15-8
- 박태규. 2013.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National Assembly Library. 제50권 제5호 : 22-27
- 박 훈·이상신. 2009.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박 훈·이상신·문예영. 2010. “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용역자료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 백운찬. 2012.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혜정. 2011.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정보 : 4-12
- 서희열·심충진·조영탁. 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9-35
- 손원익·김정아·송은주. 2007. “주요국의 기부금 주요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김진수. 2007.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송헌재. 2013.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 151-178
- 임규진·이전오. 2012.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 283-324
- 정재연. 201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 321-346

A Study of Donation System and Taxation Support Plans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Su Sung Kim* · Seong-hoon Moon**

—〈Abstract〉—

The methods of nation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are that the direct support method by national budget and the indirect support method which support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by support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 etc. instead of government. The latter method was made by mainly donation.

By the way, we verified that there was the fault regarding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hen we consi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upports about various donation systems to encourage donation culture through all socie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effective methods are the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taxation support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This study researched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and the taxation problem regarding current donation system, through these, we examined the taxation support plan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Not only the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the taxation support plan was very importan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e variou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such as donation pension system, pension donation system and service donation system, stock donation, inheritance donation system etc. and the complete taxation support is necessary in case of actual donation.

The insistent support pla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onation culture should be encouraged by various donation system and the taxation support plans should be necessary which were correspond to each donation system. Second, currently according to donation income tax deduction was changed to tax credit, the donation culture would be hindered. So, the change to income tax deduction or the expansion of tax credit rate would be necessary. Third, the donation which was expensed in relevant year should be fully deducted in current business year by expansion of taxation support for donation deduction carried forward. Finally, the transparenc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secured and the reliabilit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recovered by management reinforc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and it is need to reinforc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institution or individual falsely for the

* The Korean Teachers Pension, Ph.D. of Science in Taxation, mercury@tp.or.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oncta@hallym.ac.kr, Corresponding Author

purpose of prevention of false donation deduction fundamentally.

This study found the actual plans that extend the donation culture and encourage the social contribution according to donation by related legislation support and taxation suppor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e wish that the voluntary donation culture would be spread and the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would be extended by this stud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found actual and effective plan for positive taxation support of donation.

〈Key words〉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donation, Donation income tax deduction and tax credit, Donation taxation